



**LOMA LINDA UNIVERSITY
BEHAVIORAL MEDICINE CENTER**
운영 방침

분류:	재무관리	코드:	BC-55
제목:	청구 및 징수*	발효일:	2017년 12월
		대체 대상:	신규
		페이지:	1/4

1. 목적

1.1. 본 방침은 Loma Linda University Behavioral Medicine Center (“LLUBMC”) 및 그 재정 지원 방침(Financial Assistance Policy, FAP)에 적용되며, 1986년도 미국 연방조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 501(r)조 (개정 내용에 따름) 및 그에 따른 규정 등 관련 연방법, 주법, 지방법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본 방침은 LLUBMC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비 체납의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정하며 이에 특별징수조치(Extraordinary Collection Actions, ECA)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LLUBMC는 응급 상황이나 기타 의료상으로 필요한 진료를 지불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거부하지 않습니다. 본 방침을 구성하는 지도원리는 치료 중인 모든 환자 및 개인을 존엄성과 존중심을 가지고 동등하게 대우하고, 적절한 청구 및 징수 절차를 균일하게 준수하며,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불할 책임이 있는 개인이 FAP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2. 방침

2.1. LLUBMC는 보험 가입 및 미가입 환자들이 지불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또 FAP에 의한 지원 수혜 자격이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 일관되고 준법적인 환자 청구 및 징수 관행을 적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3. 절차

3.1. LLUBMC는 환자가 LLUBMC FAP에 따른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직접적으로 또는 위탁업체를 통해서, ECA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3.2. 환자 또는 보증인(이하 "환자"라 함)이 의료서비스를 받는 당시 또는 이사할 경우 정확한 우편 주소와 정확한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본인 의무입니다. 환자 계정에 유효한 주소나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이는 합리적인 노력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3. 보험에 가입된 환자의 편의를 위해, 초기 청구는 가입된 보험회사로 접수됩니다. 청구가 일차적 보험 지급자에 의해 지불된 후에는 환자를

* Loma Linda University Medical Center 운영 방침 C-55로부터 채택

분류:	재무관리	코드:	BC-55
제목:	청구 및 징수*	페이지:	2/4

대신하여 이차적 또는 제3차 지불인에게 LLUBMC 또는 그 위탁업체가 청구를 하게 됩니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LLUBMC가 직접 청구합니다.

3.4. 일차 및 이차 청구가 해결된 후에는,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계정이 LLUBMC에 대한 환자의 지불 잔액에 대해 동일한 징수 절차를 밟게 됩니다.

- a. LLUBMC 또는 그 위탁업체는 해당 치료에 대해 퇴원 후 첫 번째 청구서 날짜로부터 150일이 지날 때까지, 그리고 FAP에 의한 환자의 재정 지원 수혜 자격 여부 결정을 위한 합리적 노력이 행해지기 전에는 ECA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b. LLUBMC 또는 그 위탁업체는 환자에게 네(4) 차례의 우편 청구서를 보낼 것이며, 여기에는 재정 지원 이용 가능성을 알려주는 통지서 및 LLUBMC 또는 그 위탁업체가 환자에게 FAP를 알려주는 최소한 한 차례의 전화통화 시도가 포함됩니다.
- c. ECA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일 전에, LLUBMC 또는 그 위탁업체가 다음을 조치를 취합니다.
 - 1) 진료비 확보를 위해 LLUBMC가 시행하고자 하는 ECA에 대한 통지를 환자에게 제공.
 - 2) 쉬운 말로 된 FAP 요약본 을 환자에게 제공.
 - 3) 가장 마지막으로 알려진 환자의 전화번호로 환자에게 전화 연락 시도.
- d. 미지급이 발생하여, 이용 가능한 재정 지원에 대해서 환자에게 합리적인 통지를 한 후, LLUBMC 또는 그 위탁업체는 퇴원 후 첫 번째 청구서 날짜로부터 150일이 지난 이후 징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e. 완전히 작성된 재정지원신청서(Financial Assistance Application, FAA)가 신청 기간 중에 접수된 경우에는, LLUBMC는 ECA를 중단하고 FAP에 의한 환자의 재정 지원 수혜 자격 여부를 밝히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신청 기간 중에 불완전한 FAA가 접수된 경우에는, ECA는 최대 30일 동안 중단될 것이며, 그 동안 LLUBMC는 FAA가 완전히 작성되지 않으면 ECA가 개시 또는 재개됨을 알리는 서면 통지서를 환자에게 보냅니다. 징수 조치는 다음 상황에 재개됩니다 — (i) 부분 조정 발생 시, (ii) 환자가 재정 지원 절차에 비협조적인 경우, 또는 (iii) 환자가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분류:	재무관리	코드:	BC-55
제목:	청구 및 징수*	페이지:	3/4

f. 만일 제3자 업체 또는 미수금 처리 대행 회사에 의해 환자가 LLUBMC의 재정 지원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환자의 계정은 재정 지원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CA는 최대 30일 동안 중단될 것이며, 그 동안 LLUBMC는 FAA가 완전히 작성되지 않으면 ECA가 개시 또는 재개됨을 알리는 서면 통지서를 환자에게 보냅니다. 징수 조치는 다음 상황에 재개됩니다 — (i) 부분 조정 발생 시, (ii) 환자가 재정 지원 절차에 비협조적인 경우, 또는 (iii) 환자가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3.5. 환자들은 징수 주기 기간 중 언제든지 LLUBMC FAP에 따른 재정 지원 심사를 받기 위해 재정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원이 고려되기 이전에 제3자 지불인을 통한 모든 이용 가능한 지원 방안 및 지급이 전부 사용되어야 합니다.

3.6. 환자들은 LLUBMC 웹 사이트 및 서신 연락을 통해 의료비 완납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LLUBMC FAP에 의한 지불 처리를 강구해 볼 것을 권합니다.

4. 청구 및 징수 방침 공개 수단

4.1. 청구 및 징수 방침, 재정지원방침(FAP), 쉬운 말로 된 FAP 요약본, 재정지원신청서(FAA) 사본은 널리 공지되며 다음 방식을 통해 입수할 수 있습니다.

4.2. 온라인으로 — LLUBMC 웹 사이트에서
<https://medical-center.lomalindahealth.org/financial-assistance#llubmc>

4.3. 전화 — LLUBMC 고객 서비스 (909) 651-4177

4.4. 우편 — LLUBMC Customer Service, P.O. Box 700, Loma Linda, CA 92354

4.5. 공지문 게시, 종이 사본이나 책자 — 응급부서, 모든 LLUBMC 병원의 입원 구역 및 사무실 내에 병원 서비스 구역에 적합한 언어로 작성.

4.6. 직접 대면 — 필요한 경우 LLUBMC 병원에서 재정 상담가의 환자 방문 및 적절한 경우 지정된 직원과의 상의.

4.7. 의료비 청구서 — 재정 지원 문의에 필요한 전화번호 안내.

5. 정의

5.1. “신청 기간”이란 개인이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신청 기간은 LLUBMC가 해당 개인에게 진료에 관한 첫 번째 청구서를 우편 또는

분류:	재무관리	코드:	BC-55
제목:	청구 및 징수*	페이지:	4/4

전자 방식으로 제공한 날로부터 240일째 되는 날에 종료하지만, 특별 상황에서는 LLUBMC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5.2. “위탁업체”란 서신, 통지서, 청구서 또는 환자의 납부금 관련 기타 서류를 제작 및 발송하고 또 청구서 체납금과 관련하여 환자에게 연락하기 위해 LLUBMC가 계약 관계를 맺는 업체들을 말합니다.
- 5.3. “특별징수조치(ECA)”란 LLUBMC가 LLUBMC의 재정지원방침하에 처리된 진료에 대한 의료비 청구서 지급과 관련하여 해당 개인에 대해 취하는 조치를 말하며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a) 연방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개인의 부채를 다른 당사자에게 파는 것; (b) 해당 개인에 대한 불리한 정보를 소비자 신용 조사 기관에 보고하는 것; (c) 연방 법이 지정한 법적 또는 재판 절차를 요구하는 특정 조치들로, 일부 선취특권, 부동산 압류, 압수, 민사 소송 제기, 해당 개인의 압류 영장 대상 초래, 임금 압류 통고 등이 포함됩니다. ECA에는 병원이 치료를 제공한 개인적 상해의 결과로 인해 개인(또는 그 대리인)이 받아야 하는 판결금, 합의금, 타협금에 관하여 병원이 주법 하에 주장할 권리가 있는 유치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5.4. “재정지원방침”이란 재정 지원, 구체적으로는 LLUBMC FAP가 필요한 자격을 갖춘 환자들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LLUBMC가 제정한 방침을 의미합니다.
- 5.5. “연방조세법(Internal Revenue Code) 501(r)”은 자선 병원에 적용되는 법규를 포함합니다.
- 5.6. “의료상으로 필요한 진료”란 캘리포니아 복지및시설법(California Welfare & Institutions Code) §14059.5에 의해 정의된 의료 서비스를 말합니다. 생명 보호, 상당한 질병이나 중대한 장애 예방, 심한 통증 완화에 합리적이고 필요할 경우 해당 서비스는 의료상으로 필요하거나 의료적 필요라고 합니다. 의료적으로 효과적인 대안 치료법을 이용할 수 있는 특별 서비스들은 해당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1) 미용 및/또는 성형 서비스; 2) 불임 서비스; 3) 시력 교정; 4) 양성자 치료; 5) 로봇식 시술; 6) 의료 보장구학/보철; 7) 대리모 임신; 또는 8) 주로 환자의 편의 및/또는 편리를 위한 기타 서비스.
- 5.7. “쉬운 말로 된 요약본”이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사용이 간편한 재정지원방침 요약본을 말합니다.

6. 방침 상호 참조

- 6.1. LLUBMC 재정지원방침